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8. 19 선고 2021가단10229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김정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강미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1. 7. 22.

판 결 선 고 2021. 8. 19.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2020. 1.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위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

D 주식회사(이하 D㈜)는 2015. 9. 24. C에게 25,500,000원을 기간 48개월, 이자 연 7.5%, 연체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D㈜는 2019. 2. 19. 원고에게 C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C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C을 상대로 양수금 지급의 소(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소795595)를 제기하여 2019. 12. 20. ‘C은 원고에게 14,659,919원과 그중 12,316,021원에 대하여 2019.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C의 처분행위 :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C의 아버지인 E는 2019. 7. 1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인 배우자 F와 자녀들 C, 피고는 2020. 1.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단독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1.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7. 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의 무자력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인 2020. 1. 2. 기준 C은 G은행에 대한 대출금 118,972,000원 채무와 원고에 대한 양수금 12,316,021원의 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아무런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H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가 C에 대하여 양수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고, 위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상속재산분할협이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에 의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인 2/7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인 2/7 지분에 관하여 C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은 이로 말미암아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채무자인 C에게 위와 같은 사해 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망인은 2013년경 C에게 아파트를 사주었고, 2020년경에는 전세집을 마련해주는 등 물질적 지원을 많이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물려받는 것으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본다. 을 제1,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① F가 C에게 2018. 1. 4. 10,000,000원 및 2018. 5. 24. 20,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 F가 2019. 4. 15. D(주)에 14,304,254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2018. 1. 4. C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② C이 2013. 1. 28. I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J아파트 K호를 매수하여 2013. 5. 9.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나, 나아가 망인이 C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점 및 그 금원지급이 생전에 증여된 재산으로서 상속분의 선급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인 2/7 지분에 관하여 C과 피고 사이에 2020. 1. 2.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최보원

별지